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38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수정이유

위탁과정에서 변경이 예상되는 위탁기간과 보조금액 및 이행보증금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위탁기간을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수정
위·수탁기간은 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를
⇒ 위·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〇년〇월〇일부터 〇년〇월〇일로 함.
- 보조금액을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수정
보조금은 연간 2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
⇒ 보조금은 연간 〇〇〇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함.
- 이행보증금을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수정
보증금액은 매 회계연도 총지원액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은 20%를
⇒ 이행보증금은 연간 총보조금의 20%로 하고, 총보조금이
연간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.

3. 첨부자료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2.주요골자의 위탁관리 기간중 “2001. 3. 1~2003.12.31(2년10개월)”을 “3년으로 하되 위탁개시일부터 ○년○월○일로 한다. 단, 회계연도를 감안하여 3년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- 2.주요골자의 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“소요경비와 운영수입금을 감안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”
- 2.주요골자의 협약의 보증중 “보조금 총액의 20% 이행보증금 예치”를 “이행보증금은 연간 총보조금액의 20%로 하되 연간 총보조금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 2천만원을 예치”로 한다.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 위·수탁협약서(안) 제3조제1항중 “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”를 “3년으로 하되 ○년○월○일부터 ○년○월○일로 한다. 단, “갑”의 회계연도를 감안하여 3년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 위·수탁협약서(안) 제10조제2항중 “2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. ※추후 수탁자 결정시 보조금액이 확정되므로 변동 가능함”을 “○○○원으로 한다”로 한다.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 위·수탁협약서(안) 제21조제2항중 “보증금액은 “갑”이 교부 결정한 때 회계연도 총지원액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은 20%로 한다”를 “이행보증금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원하는 연간 총보조금의 20%로 한다. 단, 총보조금이 연간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수 정 안
<p>2. 주요골자</p> <p>○위탁관리 기간 <u>2001. 3. 1~2003.12.31(2년 10개월)</u></p> <p>○보조금 지원 <u>가. 소요경비와 운영수입금을 감안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</u> <u>나. 보조금은 2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까지 보조금 지급</u> <u>※추후 수탁자 결정시 보조금액이 확정되므로 변동 가능</u></p> <p>○협약의 보증 <u>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보조금 총액의20% 이행보증금 예치</u></p> <p>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위·수탁협약서(안) 제3조(위·수탁기간) ①이 협약에 의한 위·수탁기간은 <u>2001년 3월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>2. 주요골자</p> <p>○위탁관리 기간 <u>3년으로 하되 위탁개시일부터○년○월○일로 한다. 단, 회계연도를 감안하여 3년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</u></p> <p>○보조금 지원 <u>소요경비와 운영수입금을 감안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</u> <u>나. (삭제)</u> <u>※ (삭제)</u></p> <p>○협약의 보증 <u>-----이행보증금은 연간 총보조금액의 20%로 하되 연간 총보조금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 2천만원을 예치</u></p> <p>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위·수탁협약서(안) 제3조(위·수탁기간) ① ----- <u>----- 3년으로 하되 ○년○월○일부터 ○년○월○일로 한다. 단, “갑” 의 회계연도를 감안하여 3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수 정 안
<p>제10조(보조금의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“갑” 이 “을” 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2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.</p> <p>※추후 수탁자 결정시 보조금액이 확정되므로 변동 가능함</p>	<p>제10조(보조금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○○○원으로 한다.</p> <p>※ (삭제)</p>
<p>제21조(협약의 보증)① (생략)</p> <p>②보증금액은 “갑” 이 교부 결정한 때 회계연도 총지원액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은 20%로 한다.</p>	<p>제21조(협약의 보증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이행보증금은 “갑” 이 “을” 에게 지원하는 연간 총보조금의 20%로 한다. 단, 총보조금이 연간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</p>